S-Mark (일본)

1. 개요

▣ 정의	Safety mark (일본 안전인증)
▣ 개요	- 일반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해 특히 위해를 입히는 위험이 많은 제품을 "특정제품"으로서 政令으로 지정하고, 省令으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제도
▣ 대상품목	- 전기용품취급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시작으로, 저전압전원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주된 대상제품 - 대상 특정제품 1) 제1종 특정제품 (정부인증품목) : 유아용침대, 등산용로프 2) 제2종 특정제품 (자기인증품목)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야구용헬멧,승차용헬멧,롤러스케이트
▣ 주요내용	- 인증방식의 종류 1) 모델인증방식 ①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모델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②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제품시험(기본시험)에 의해 확인함과 동시에,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조사(초회 공장검사)를 한다. 제품시험 및 공장조사의 결과가 적절하면, 개개의 모델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2) 롯트 인증방식 ① 제조된 전기제품 등 (최종제품)의 롯트(전기제품 등의 형태 번호가 동일하고, 수입·제조 등의 단위가 한정된 하나의 집단) 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공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해당제품의 식별기호(형태 번호)가 동일 롯트 마다, 샘플링하여 제품시험을 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라벨을 붙인다.
▣ 인증마크	JQA JET

▣ 인증기관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 (JET) : www.jet.or.jp - 일본품질보증기구 (JQA) : www.jqa.or.jp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KEMTI) : www.komtri.re.kr - 한국화학시험검사소 (KOTRIC) : www.kotric.or.kr
▣ 적용국가	- 일본
▣ 적용규격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시행령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시행규칙 - 통상산업성관계특정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하는 省令

2. S 마크 인증

가. 대상제품

전기용품취급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시작으로, 저전압전원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주된 대상제품이다.

나. 계약대상자

상기의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인증기관의 인증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대상자가 된다.

- 인증기관명

(財)일본전기용품시험소 (JET)

(財)일본품질보증기구 (JQA)

다. 시험기준

인증시에 시행하는 제품시험에 적용하는 시험기준은,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省令(제1항 또는 제2항)"을 원칙으로 하지만, 同省令에 없는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거하여 인증기관이 정하거나 인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라. 인증마크

인증제품에는 각 인증기관공통의 마크에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로고가 있는 마크를 표시한다.

마. 인증방식의 종류

(1) 모델인증방식

①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모델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②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제품시험(기본시험)에 의해 확인함과 동시에,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조사(초회 공장검사)를 한다. 제품시험 및 공장조사의 결과가 적절하면, 개개의 모델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③ 인증 후는, 인증된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제품시험(임의시험 등), 제조공장의 생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공장조사(정기공장조사)가 실시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정(인증마크의 계속사용)이 계속된다.

(2) 롯트 인증방식

① 제조된 전기제품 등 (최종제품)의 롯트(전기제품 등의 형태 번호가 동일하고, 수입·제조 등의 단위가 한정된 하나의 집단)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공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해당제품의 식별기호(형태 번호)가 동일 롯트 마다, 제품임의(샘플링)를 시행하고, 샘플링된 제품에 대해서 제품시험을 한다.

③ 제품시험에 적합했을 때는, 임의 모집단(롯트)에서, 소정의 수량의 임의 검사를 하고, 적합한 제품과의 동일성에 대해서의 제품조회시험을 한다.

④ 상기에 적합하였을 때는, 제품에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라벨을 붙인다.

바. 인증 취소·계약해제 (마크 사용권의 취소)

인증제품이 적용규격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의 경우에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증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여 인증마크의 표시를 금지시키는 처리를 취하는 일이 있다.

사. JQA의 S마크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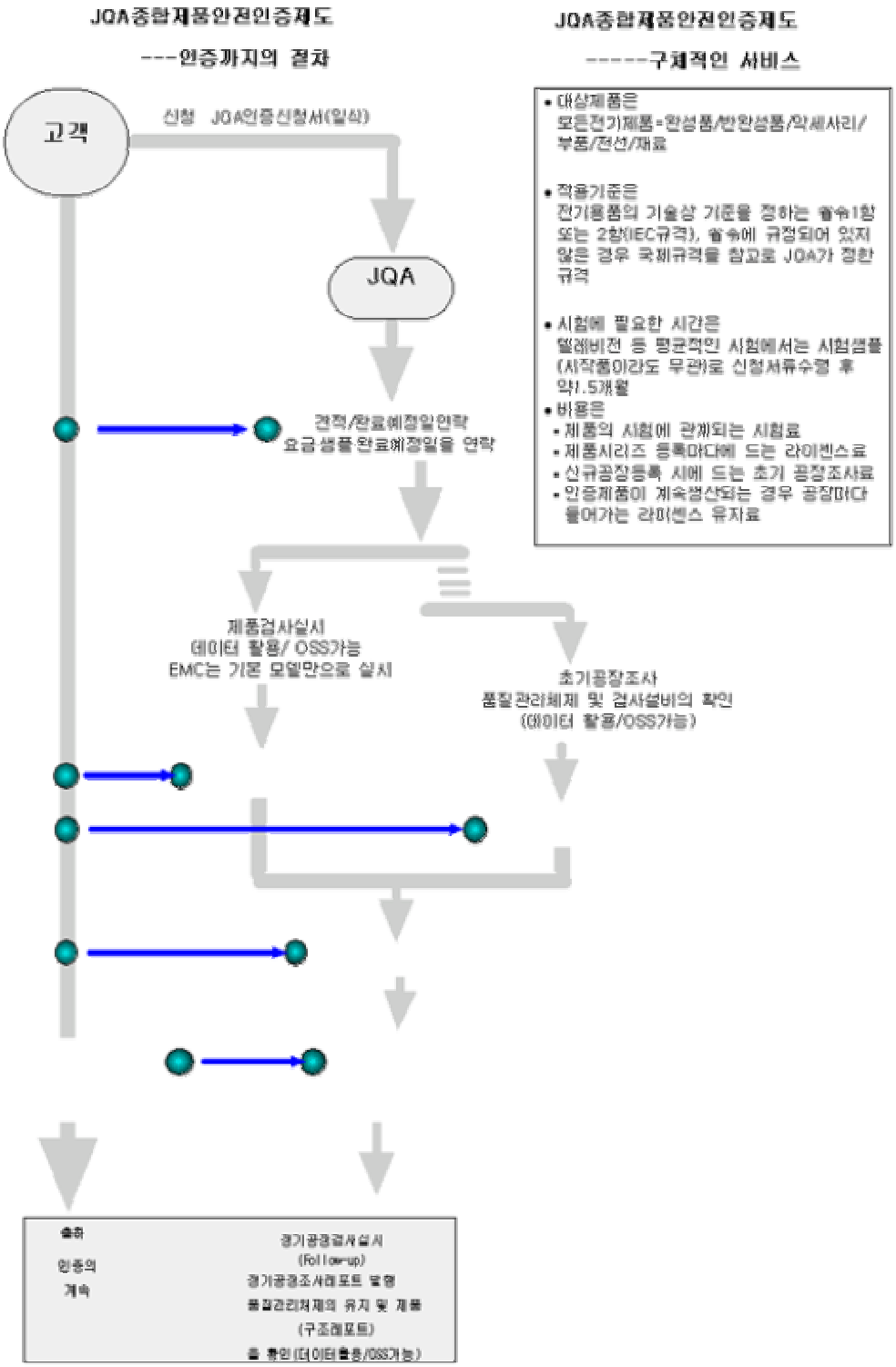

3.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 의한 인증마크

가. 법률·제도의 목적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해서,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나라에 의한 위험한 제품의 관리를 함과 동시에, 민간에 있어서의 제품의 안전성확보 향상에 관하는 자주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의해,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한다.

일반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해 특히 위해를 입히는 위험이 많은 제품을 "특정제품"으로서 政令으로 지정하고, 省令으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제도가 S마크제도이다.

나. "인정제품" (SG마크제도)

"특정제품" 이외의 것으로 일반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민간의 자주적 판단으로 선택, 그것을 "인정제품"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인정제품"에 의한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학식경험자, 소비자, 제조사업자 등의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대신의 승인을 얻어 정한 안전기준(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만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인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는 피해자구제제도가 설치되어 있는 임의의 제도가, SG마크제도이다. 또한, 법시행을 위한 입입검사, 시매검사 등의 감시체제, 위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해방지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政省令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시행령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시행규칙
- 통상산업성관계특정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하는 省令

라. S마크제도 대상품목

(제품안전 및 가정용품 품질표시 심의회에 자문하고, 政令으로 지정)

- 제1종 특정제품(정부인증품목): 유아용 베드, 등산용 로프
- 제2종 특정제품(자기인증품목):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야구용헬멧, 승차용헬멧, 롤러스케이트

규격·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省令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제품에 관계되는 국제규격은 현재 없지만, 제정된 경우는 조합성을 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검정기관은, 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주무대신이 지정하고 있다.

국가가 학식경험자, 소비자, 시험기관, 제조사업자 등의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省令을 개정·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준제도·개정심의 전에, 해외통보를 하여 외국관계자의 의견 표명 및 위원회의 참가를 조회하고 있다 (3주간의 기간을 정하고 조회). 개정기준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의견의 표명 조회를 하고 있다 (동 9주간). 특정제품의 지정해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및 가정용품 품질 표시심의회에서의 지정해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마. SG마크제도 대상 품목 (제품안전협회가 자주적으로 인정)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품목은 107품목정도가 된다.
제품안전협회가 학식경험자 등의 검토를 거친 후에 통상산업대신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고 있다. 국제규격이 있는 것은 조합성을 취하고 있다.

- 유아용 제품 (21품목)
  : ▲유모차, ▲보행기, ▲그네, ▲미끄럼대, ▲유아용철봉, ▲유아용 세발자전거,
  : ▲페달식 자동차, ▲면봉, ▲유아용 침대(제1종특정제품), ▲아기 보호대,
  : ▲유아용 높은 의자, ▲고이노보리용 연속식볼, ▲파이프식 아기 보호 기구,
  : ▲고이노보리용 화살표차, ▲유아용 이동방지제품, ▲1인용 그네, ▲유아용 의자,
  : 프레이펜, 금속제 절구단, ▲유아용 테이블 탈부착식 좌석, 크한
- 가구.가정,주압용품 (29품목)
  :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주택용 스프링 매트리스, ▲깡통 따개
  : ▲쇼핑 카트, ▲주택용 금속제 각립, ▲2단 침대, ▲플라스틱 욕조 뚜껑, ▲냄비
  : ▲탕파, ▲기름 시루, ▲가정용 빙수기, ▲주택용 알루미늄 함금제 사다리
  : ▲화장실휴지 홀더, ▲어린이용 우산, ▲금속판제 냄비, ▲우체통
  : ▲알루미늄판제 냄비, ▲식기 선반, ▲점착 훅, ▲육아용 서랍장, ▲좌식 의자
  : ▲주택용 금속형 발판, 금속제 접는 의자, ▲가정용 간이 빨래 걸이
  : ▲레인지대 수납고, ▲주택용 알루미늄 함금제 다관절 각립
  : 옥외용 휴대석유 버너, 압착식 간이 선반 및 봉, 회전 행거

- 스포츠.레저용품 (41품목)

: ▲야구용 헬멧(*), ▲수중 마스크, 수중 핀, ▲비치파라솔, ▲금속제 배트

: ▲롤러 스케이트, ▲등산용 로프(제1종특정제품), ▲원예용 꽃받이

: ▲엑기스팬더, ▲수동식 잔디 깎기 기계, ▲골프 연습용 네트

: 접이식 섬머베드, ▲카라비너, 마우엘 하겐, 슈타이크아이젠, 등산용 벨트

: 아이스피켈 및 아이스 햄머, ▲등산용 헬멧, ▲매달리는 기구, ▲스키

: ▲스키용 묶음 도구, ▲스키 신발, ▲난식야구용 헬멧 및 소프트볼용 헬멧

: ▲줄넘기, ▲배드민턴 라켓, ▲이동식 축구 골대, ▲뜀틀, ▲뜀틀용 발판

: ▲일반 운동용 매트, ▲배구 기구, ▲야구 및 소프트볼용 포수헬멧

: ▲이동식 농구 장치, ▲골프 클럽용 샤후트, ▲골프 클럽, ▲캠프용 텐트

: ▲스케이트 보드, 체육운동용 완충베드, 높은나무 가지치기 가위

: 가정원예용 분무기

- 고령자용 제품 (4품목)

: ▲지팡이, ▲간이변기 및 간이 수세식 좌변기, ▲보행보조차,

: ▲손으로 누르는 형의 휠체어

- 기타 (12품목)

: ▲승차용 헬멧(*), ▲탄산음료를 충전하기 위한 유리병(특정제품에서 제외됨)

: 탄산음료병(특정제품에서 제외됨), ▲자동차용 윈도우 실드 워시액

: ▲휴대용 간이 가스라이터, ▲자동차용 휴대행 쟈키, ▲자전거

: ▲자전거용 헬멧, ▲자전거용 유아좌석, ▲자전거용 공기 펌프

: 유아 난개폐 용기, ▲쇼핑웨건

이 중▲표시가 붙은 것(86품목)은, SG마크를 표시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다.
(*)는 "특정제품(S마크제품)"으로 동시에 인정기준도 정해져 있는 것임.

4. "특정제품"에 관하는 검정, 등록, 형식승인

가. 외국검사기관으로부터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이 있으면, 대신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서 현지 검사를 시행, 그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구분마다에 검사데이터 승낙 대상기관(이하 "특정외국검사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한다.

나. 이 검정을 희망하는 메이커의 요구에 따라서, 특정외국검사기관은, 해당 메이커의 특정

제품이 통상산업대신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메이커의 요구에 따라서, 특정외국검사기관은, 해당 메이커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가 경제산업대신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형식승인을 희망하는 메이커의 요구에 따라서, 특정외국검사기관은, 해당 메이커의 특정제품이 통상산업대신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다. 메이커는, 특정외국검사기관이 행한 검사데이터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1)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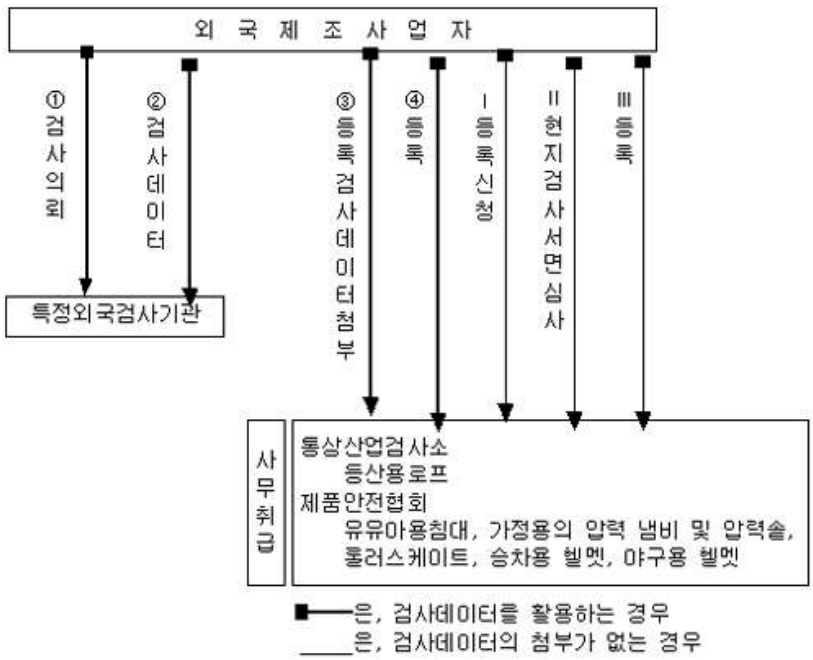

(2) 특정외국검사(시험)기관
- Underwriters Laboratories.(UL) :미국
- Technisher Uberwachungs-Verein Bayern e.V. :독일
- Laboratoire National d'Essais(LNE) : 프랑스
- Technischer Uberwachungs-Verein Rheinland e.V. : 독일
- United States Testing Co., Inc.(USTC) : 미국
-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 한국
-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검사소 : 한국

(3) 신청처 : 제품안전협회

라. SG마크표시에 외국위탁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1) SG마크제품의 지정해외검사기관

①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미국)

② United States Testing Co., Inc.(미국)

③ Techinscher Uberwachungs-Verein Rheinland e.V.(독일)

④ Technischer Uberwachungs-Verein Bayern e.V.(독일)

⑤ Laboratoire National d'Essais(프랑스)

⑥ (재)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한국)

⑦ 대만경제부상품검험국(대만)

⑧ Societe General de Surveillance S.A.(스위스)

⑨ SGS Far Esat Limited

⑩ (재)한국화학시험검사소(한국)

다음은 각 검사기관의 대상품록을 표시한다.

- SG마크제품의 전 품목 : ①②③④⑤
- 품목에 한정이 있음 : ⑥⑦
- 특정제품을 제외하는 SG마크제품의 전 품목 : ⑧⑨

5. S-Mark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PRO-1500 +HD	렌지후드BH-60
전기스토브	헤어컬링기